제2671호
2019. 7. 24.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8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제2019-9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제2019-91호 : 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 4

◉ 공 고

제2019-557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
제2019-559호 : 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 7
제2019-56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8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신당동 62-4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29	2019.07.24.	다산로36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충무로2가 48-2외 3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8길 15-1	2019.07.24.	삼일대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삼일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9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3-1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48-2외 3필지	2019.07.24.	건물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91호

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연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조사취지 :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19. 02. 01. ~ 2019. 09. 20.
4. 조사대상 : 중구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5. 조사의 내용(법 제5조)
   - 빈집 여부의 확인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2-3396-5747)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5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물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9. 7. 24. ~ 2019. 8. 7. (15일간)
2. 공고장소 : 서울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정O칠 외 4건**
	주 소 (대장상주소)	**미기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현황에 의함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조서

연번	소재지	건축물대장 현황				소유자	처분내용
		규모(층수/연면적)	주용도	주구조/지붕	사용승인일		
1	만리동2가 6-1	지상1층/16.53㎡	점포	목조/도단즙	1930.03.10.	정O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만리동2가 6-1	지하1층,지상5층/1,881.69㎡	교실	철근콘크리트/평옥개	1968.07.04.	학교법인 양정의숙	
3	만리동2가 6-2 6-3	지상1층/40.09㎡	주택	세멘부록/와즙	1960.11.04.	강O선	
4	만리동2가 10-27	지상1층/22.31㎡	주택	목조/와즙	1959.01.12. 등재	재단법인 사립 양정의숙	
5	만리동2가 10-31	지상1층/19.83㎡	주택	목조/와즙	1958.10.04. 등재	재단법인 양정의숙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59호

중구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공고(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중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등에 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 용역
2. 출입목적 :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
3. 출입기간 : 2019. 07. 18. ~ 2019. 09. 20.
4. 출입자소속 : 한국감정원
5. 출입할 건물소재지 : 별첨목록
6. 공고기간 : 2019. 07. 18. ~ 2019. 09. 20.

[빈집 추정기준(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103호))]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02-3396-5747) 및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053-663-8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할 건물소재지 목록

구분	빈 집 주 소
1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5-148
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9
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20
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22
5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0-28
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276
7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554
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26-21, 1층
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26-21, 2층
10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63-25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주민 소통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확대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제1항) 구정과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정-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변경

나. (안 제8조제1항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 신설-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다. (안 제8조의2) 주민 참여 유도·확대를 위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 신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전화 : 3396-4972, FAX : 3396-9022, E-mail : somiki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 구정과 지역 홍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